

<p>4條 市·道의 教育監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教育規則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條例를 废止하려는 것입니다.</p> <p>主要骨子는 서울特別市中·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 關한條例를 废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废止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5條, 獎學金規程 第3條, 獎學金規程施行規則 第4條에 根據하는 것입니다.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. 서울特別市中·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 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.</p> <p>(報 告)</p> <p>1. 제안경위</p> <p>본 조례(안)은 1993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</p> <p>2. 폐지사유</p> <p>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중·고등학교 입학대상자중 특출한 재질은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자격의 요건과 선정·지급방법을 규정한 것으로, 공·사립 중·고등학교의 학생의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시행규칙 제4조에 시·도의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</p> <p>서울특별시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를 폐지함.</p> <p>4. 근거</p> <p>가. 지방자치법 제15조 나. 장학금규정 제3조 다. 장학금규정시행규칙 제4조</p> <p>5. 검토의견</p> <p>○ 서울특별시 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는 1982. 2. 16. 제정되었고, 제정 당시에는 교육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중·고등학교 취학대</p>	<p>상자 중 특별한 재질이 있으나,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과 유능한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금지급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으나,</p> <p>○ 현법 제31조 및 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중·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장학금규정 대통령령 제3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, 공·사립의 중·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대상자 선정,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시·도의 교육위원회가 관掌하도록 규정하였고, 장학금 규정시행규칙 제4조에는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, 시험과목, 선정요령, 선정인원, 장학금지급액,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, 법령의 위임근거규정을 정확히 밝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,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○ 다만, 본 조례의 폐지와 규칙의 제정시 기의 공백으로 장학금지급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행정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이상 報告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詰鎬 그러면 委員 여러분들의 質疑答辯時間이 되겠습니다.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그러면 質疑와 答辯을 終結토록 하겠습니다.</p> <p>서울特別市 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中·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 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, 異議 있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異議가 없으시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宣布합니다.</p>
---	--